

관세청고시 제2024-4호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 일부개정

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(관세청 고시 제2023-62호, 2023.12.05.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24년 1월 15일

관세청장

「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」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붙임

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24-4호(2024.1.15.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)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.

[별표]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

| 연번 | 고시번호(시행일) | 품명 | 비고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552 | 2024-4호('24.1.15) |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 | |
| 553 | 2024-4호('24.1.15) | LENS K11 등 2건 | |
| 554 | 2024-4호('24.1.15) | Onion juice 등 3건 | |
| 555 | 2024-4호('24.1.15) | NASURE 51 | |

552.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4-4호 (2024.1.15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| 번호 | 품 명 | 종전 공문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Adaptive Pressure Control valve ; GT-010H3-01 ; TPV-QPDBG-ISO -250-HA-HT092-S01 ; U.S.A | 품목분류4과-3650 (2017.05.12.) |

○ 물품설명

- LCD·반도체 공정에서 진공챔버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자동 조절하기 위한 물품으로 밸브와 자동조절기가 일체로 결합되어 있음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8481.80-101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9032.20-0000호

○ 변경사유

- 지시된 압력값과 조정해야 할 압력값을 비교하여 밀폐된 챔버 내부의 압력을 일정한 희망치로 자동 유지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 9032.20-0000호로 분류(제2023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553. LENS K11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4-4호 (2024.1.15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| 번호 | 품명 | 종전 공문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LENS K11 | 품목분류3과-2446 (2018.05.18) |
| 2 | PC 카메라용 렌즈 : NL454PW | 품목분류과-104556 (2005.06.18) |

○ 물품설명

- 광섬유 용착기 또는 컴퓨터 내부에 결합되는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대물렌즈로 물체의 상을 맺게 하는 역할을 함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① 제9002.19-9000호, ② 제9002.90-9090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9002.11-9090호

○ 변경사유

- 특정기기 안에 모듈 형태로 결합되는 디지털 카메라(제8525호)에 사용되는 대물렌즈이므로 '카메라용의 것'으로 보아 제9002.11-9090호에 분류(제2023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포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554. Onion juic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4-4호 (2024.1.15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| 번호 | 품명 | 종전 공문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진한 호박100(Pumpkin juice 100); R.KOREA | 품목분류2과-5784 (2015.07.24) |
| 2 | Onion juice ; GOLDEN TAMANEKI; R.KOREA | 품목분류2과-1218 (2010.06.28) |
| 3 | 혼합 채소 주스 농축물 (Shade strawberry red-cloudy-A) | 품목분류과-101430 (2004.09.07) |

○ 물품설명

- 음용하거나 식품 등에 첨가하기 위해 양파나 호박 등의 채소를 중탕 또는 열수 등의 방법으로 추출하여 농축한 것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- 변경전 HS 품목번호 : ①제2009.89-2000호, ②제2009.80-2000호, ③제2009.90-2000호

-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1302.19-9099호

○ 변경사유

- 액상차 등의 일종으로 식물성 재료를 중탕이나 열수 등의 방법으로 추출하여 만든 제품이므로 제1302.19-9099호의 식물성 추출물로 분류(제2023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포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

555. NASURE 51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

제2024-4호 (2024.1.15)

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품명 및 종전공문

| 번호 | 품명 | 종전 공문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Supplementary feed; NASURE 51 | 품목분류2과-7671 (2018.12.05) |

○ 물품설명

- 대두유에 비타민E, 로즈마리 추출물, 레시틴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산화방지용 첨가제로 식품이나 사료 제조시 사용됨

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

○ 변경전 HS 품목번호 : 제2309.90-2099호

○ 변경후 HS 품목번호 : 제2106.90-9099호

○ 변경사유

- 식용과 사료용 둘 다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므로 조제 식료품의 범주로 보아 제2106.90-9099호에 분류(제2023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)

(적용일)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(변경일)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,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.